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8호서식] <개정 2019. 6. 28.>

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20일

신청인	성명(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	주민등록번호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 :)	
	설치 연월일	

영업소	명칭	규모 ㎡
	전화번호	자본금 원
	소재지	
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영업소 허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기본 16,000원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확인사항	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.

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허가 (허가증 발급)	→	주사무소 소재지 관할관청에 통지
신청인		처리기관: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담당 부서)				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